

「선글라스, 안경테」 안전기준 개정

국가기술표준원 (2021. 05. 26.)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, 어린이용 선글라스, 안경테 등 해당 안전기준을 5월 26일 부로 개정 고시하였으며,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- 하절기를 앞두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글라스,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, 국제표준에 맞춰 일부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.

❖ 주요 개정내용

1) 니켈용출량 시험방법 국제표준 부합화

- KS K ISO 24348 (안경테 금속부의 니켈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방법)에 따라 피부접촉부만 절단하여 측정

2) 광선 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

- 자외선 차단율, 가시광선 투과율 작성기준 명시

-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,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'자외선 투과율'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. 이와 관련하여 제품 정보에 '자외선 차단율'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하였다.

(시험 측정 수치가 '자외선 투과율'이므로 표시사항에 기재해 왔으나, 소비자 입장에서는 '차단율'이 중요하므로 제품 정보 표시를 개선함.)

- 또한,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되어 있는 경우, 니켈용출량($0.5 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week}$ 이하)을 규정하고 있는데,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함으로써,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되어 있는 경우, 니켈용출량($0.5 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week}$ 이하)을 규정하고 있는데,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함으로써,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제조·수입업자는 자외선 차단율, 니켈용출량, 치수 등을 시험하여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. 특히,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(KC)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 소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KC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.

(단,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‘안전기준준수’ 품목으로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음)

